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101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황 희 · 김재원 · 김원이  
김 윤 · 김종민 · 손명수  
진선미 · 이광재 · 문진석  
김태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한국예술성장진흥원) ①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유통 활성화 및 향유 촉진 지원
2. 문화예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관리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연수 지원
5.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6.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중 “연합회”를 “연합회, 진흥원”으로 한다.

제41조 중 “위원회”를 “위원회, 진흥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경영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술경영지원센터”라 한다)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성장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명의를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행한 행위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38조의2(한국예술성장진흥원)</u></p> <p><u>①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u></p> <p><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p> <p><u>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문화예술의 유통 활성화 및 향유 촉진 지원</u></li> <li><u>2. 문화예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관리 지원</u></li> <li><u>3.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u></li> <li><u>4.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연수 지원</u></li> <li><u>5.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u></li> <li><u>6.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u></li> <li><u>7.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u></li> </ol> |

|                          |                             |
|--------------------------|-----------------------------|
|                          | <u>운영</u>                   |
|                          | <u>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u>  |
|                          | <u>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u>        |
|                          | <u>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u>     |
|                          | <u>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u>     |
|                          | <u>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u>      |
|                          | <u>한다.</u>                  |
| 제40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제40조(감독) -----              |
| 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         | -----                       |
| 요하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 -----                       |
| 예술의 전당, <u>연합회</u> 의 업무· | ----- <u>연합회, 진흥원</u> ----- |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 -----                       |
|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          | -----                       |
| 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       |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       |
| 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          | -----                       |
| 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 -----                       |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 -----                       |
| 사에게 위임하거나 <u>위원회</u> , 그 | ----- <u>위원회, 진흥원</u> ----- |
|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 -----                       |
| 수 있다.                    | -----.                      |